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2018868 판결 [건물매수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20188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5545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혁수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오용규

변론 종결2022. 10. 5.

판결 선고2022. 10. 2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5545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6,239,754원 및 그중 15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61,239,754원에 대하여는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200,000원 및 그중 15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76,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¹⁾.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면 3행의 "1,200만 원"을 "월 1,200만 원"으로 고친다.
- 3면 각주 3)의 "G 전 202m²"를 "H 전 202m²"로 고친다.

- 5면 10행의 "2019. 1. 31."을 "2019. 10. 31."로 고친다.
- 9면 1행의 "이 사건 토지를" 다음에 "임대차기간 1년"을 추가한다.
- 9면 6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임대기간 중 수용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건물 및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피해보상비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4항 역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면 위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 규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비용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정하여졌음을 뒷받침할 뿐이다)"으로 고친다.
- 12면 3행의 "수위"를 "주위"로 고친다.
- 12면 아래에서 2행의 "매각한 점"을 "매각한 점, ⑤ 앞서 본 메일의 문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향후 원인자부담금 상당의 이익을 누리게 되는 모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로 위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는 식당으로 사용될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그 새로운 임차인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당시 원인자부담금이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선영

판사김용하

판사홍지영

1) 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2022. 10. 4.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진술하면서 제1심에서 단순 병합 형태로 구하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와 원인자부담금 상당의

약정금 청구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일부 소취하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청구취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종전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유지된다.